

부서장성과평가위원회규정

부서장성과평가위원회규정

<규정명 변경 2010. 2. 11>
제정 2007. 7. 12
일부개정 2010. 2. 11
일부개정 2015. 3. 27
일부개정 2017. 12. 22
일부개정 2018. 8. 29
일부개정 2018. 12. 19
일부개정 2019. 3. 27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일부개정 2010. 2. 11>
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법인에 부서장성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② 위원회는 부서장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포함한 평가방법을 결정하고, 그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,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한다.
③ 위원회는 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1회 실시하며, 그 때까지 존속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.<일부개정 2018. 8. 29, 2019. 3. 27.>

제3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원장은 매년 위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촉한다. 단, 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.<일부개정 2015. 3. 27, 2017. 12. 22.>

1. ~ 2. <삭제 2015. 3. 27>

② <신설 2010. 2. 11> <삭제 2015. 3. 27>

③ 제1항에서 원장은 법인의 임·직원 및 현직 공무원(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한다)을 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.<번호변경 2010. 2. 11>

④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.<번호변경 2010. 2. 11>

⑤ 법인의 임·직원은 누구라도 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<번호변경 2010. 2. 11>

■ 부서장성과평가위원회규정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원장이 별도 정한다.
<일부개정 2010. 2. 11, 2018. 12. 19.>

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성과평가 등) ① 위원회는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.<일부개정 2010. 2. 11>

② 성과평가는 계량적인 지표만 보지 않고 리더십과 비전, 혁신의지와 같은 정성적인 지표도 함께 고려한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과 직원들을 면담할 수 있고, 이들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줄 수 있다.<일부개정 2010. 2. 11>

④ 성과평가의 결과는 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,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성과평가방법의 개발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원장이 이사회에 추경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실비지급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<2007. 7. 1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.

부 칙<2010. 2. 1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.

부 칙<2015. 3. 2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 12. 2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8. 2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은 정관시행일과 같이한다.

부 칙<2018. 12. 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3. 2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